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6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황주홍 · 이양수 · 윤준호

김성찬 · 오영훈 · 박주현

경대수 · 손혜원 · 김태흠

박완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제1항 제9호 등).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 홍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 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제13 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 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u>판명</u> <u>된</u>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u>밝혀</u> <u>진</u> ----- ----- ----- 10.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 제2항(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
이 경과된 경우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 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1. (현행과 같음)

2. -----

--지난-----

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u>공익상</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u>공익을 위하여</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